

제2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「해외유망전시회 단체 참가 지원」
공공기관 위탁·대행 동의안
(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「해외유망전시회 단체참가 지원」 공공기관 위탁·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65호
- 나.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4. 2. 2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2. 2.

2. 제안이유

- 해외유망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체계적·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·대행을 추진하는 바,
-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·대행 추진근거

- 1)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3항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2)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(마케팅 등 지원)

나. 위탁·대행 추진 필요성

- 1)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

- 2) 관내 중소기업에 사전컨설팅 제공, 통역인력 지원 등 해외 마케팅 지원

다. 위탁·대행 사무 주요 내용

- 1) 대상사업 : 해외유망전시회 단체참가 지원
- 2) 대행기간 : 협약일로부터 2026. 12. 31.까지
- 3) 대행기관 : 서울경제진흥원(SBA)¹⁾ G밸리활성화팀
- 4) 대행 사업 내용 : 해외유망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 수행 전반
 - 가) 사업수행, 사업비 관리
 - 나)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
 - 다) 전시회 참가기업 사전컨설팅 및 설명회
 - 라)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(성과공유회)
 - 마) 참여기업 사후관리 등
- 5) 소요예산 : 480,000천원(전액구비)

4. 관계법령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3조 제3항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6조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」 제8조

1)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특별시의 경제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창업 촉진, 기업 성장, 산업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(1998년 창립,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, ☎ 1577-7119)

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」 제8조 제1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·대행하고자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-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외유망전시회 단체 참가 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감안할 시 우리구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에 다년간 노하우 및 전문성을 가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에 위탁·대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중소기업기본법

[시행 2024. 1. 9.] [법률 제19992호, 2024. 1. 9., 일부개정]

제4조(중소기업자 등의 책무) ①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중소기업자와 그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정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 7. 25.]

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2. 8. 15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49호, 2022. 8. 15., 일부개정]

제6조(마케팅 등 지원) ① 구청장은 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·홍보하고, 국내·외 판로 개척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구에서 소요되는 물품(공사·용역)을 구매할 경우 관내 우수 기업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.

제13조(예산 지원) 구청장은 기업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·중소기업자(소상공인)를 위한 교육비
2. 중소기업의 경영전략, 기술 및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각종 컨설팅 경비

3.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홍보 및 국내·외 시장개척에 소요되는 경비
4. 산·학·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의 사업비
5.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관련단체의 사업비
6.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

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3. 10. 12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401호, 2023. 10. 12., 제정]

제8조(구의회 동의) ① 구청장이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·대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
2.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·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
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위탁·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4.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
5. 연간 위탁·대행금액(수탁·대행기관이 위탁·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·운영비를 포함한다)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
6. 재난, 재해 대응 등 위탁·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

③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·재대행 또는 재계약에 대해서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10조(수탁·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·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.

1.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·기구·장비·시설 및 기술 수준
2.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
3. 수탁·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
4.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·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수탁·대행기관의 명칭·소재지
2. 위탁·대행의 목적
3. 위탁·대행사무 및 그 내용
4. 위탁·대행기간
5. 위탁·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
6. 위탁·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
7.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
8. 수탁·대행기관의 의무
9. 계약의 해제·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
10. 지도·점검에 관한 사항
11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탁·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위탁·

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·대행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구의회와의 동의와 다르게 위탁·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.

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, 위탁사무명, 위탁기간 등을 금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